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6. 8(수)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연구관 배진한 (Tel. 044-200-2409)
* 엠바고 : 6.8(수) 10시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산림청			

8개 부처 11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하나로 묶는다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 개정('16.6.9.)
- 수수료 상한선 설정, 서식 통일화, 신속인증제도 도입 등 기업편의성 향상
 - ※ '15.11월 발표한 “인증규제정비” 과제 총 113건 중 57건 개선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동 고시하였다.

<각 부처·청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현황>

제도명	분야	담당부처	근거법률	최초시행	운영기관
신기술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2014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수산식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목재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한국임업진흥원
	건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198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0	
	재난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2007	국민안전처
	환경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19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기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1996	농촌진흥청	
신제품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국가기술표준원

-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15.11.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제정한 통합인증요령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 금번 개정된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하였다.
 -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두 번째로,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하여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하여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 농림·식품 신기술(년 2회), 일반신기술(년 3회), 보건신기술(년3회), 목재신기술(년 4회)
 - 이를 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 번째로,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국가기술표준원)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이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정보 공유·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를 통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 및 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 및 일반화된 기술이 인증되어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 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표>

현행	개정안	비고
신기술인증에 한함	⇒ 10개 신기술 및 1개 신제품 전체	모든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대상으로 운영
인증절차는 개별규정에 따름	⇒ ①(절차) 1차, 2차, 3차 원칙 (추가 및 세부절차 별도운영) ⇒ ②(서식) 서식 통일화	인증절차 및 서식 통일화
없음	⇒ 수수료 상한액 지정	수수료 상한액 지정
없음	⇒ 관련 서식 추가	서식 추가
없음	⇒ 시장출시를 위해 신속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속인증심사 신청 가능	신속인증심사제도 도입
없음 (단, 신기술협의회 구성, 산업부 주도)	⇒ ①협의회장 : 국무조정실장 ②구성 : 부처별 인증소관국장(당연직) ③간사 : 산업부 소관 국장	신기술·신제품인증제도 개선 활성화
없음	⇒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부 구축·운영)	통합시스템 운영

□ 국무조정실은 동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총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주요사례로 우선, 기업의 인증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토록 할 예정이며,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15.12.)
 - “벽체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제도”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불필요한 사후관리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15.12.)

- 두 번째로, 국제사례가 없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한 폐지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 국제 인증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은 폐지하고, 관련 기업우대 제도는 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유지토록 하였으며,
 - *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6.4.)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최근 3년 동안 인증실적이 전무한 실효성 없는 제도로 폐지되었다.
 -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15.12. 국회본회의 의결)
- 세 번째로, 중복인증 해소차원에서 정비한 과제로,
 - 동일 품목에 중복적으로 인증·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는 "GS인증제도"로 통합하였으며,
 - * 행정업무용 SW 선정 폐지 고시(‘15.12.)
 -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우수화물정보망 및 우수물류창고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은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하였다.
 - * 물류정책기본법 (‘15.12 시행)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5.6. 시행) 개정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인증제도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 (붙임) 1. 통합운영요령 신·구 대비표
 2. 인증제도 개선 현황
 3. 각부처 신기술 인증 비교(8개 부처 10개 신기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무조정실 연구관 배진한(☎ 044-200-2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통합운영요령 신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 포함한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전력기술관리법」, ----- ----- 「건설기술진흥법」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 -----.</p>
<p>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한 것을 말한다. <신 설></p>	<p>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국민안전처장관, 농촌진흥청장----- ----- -----인증("지정"을 포함한다)-----.</p> <p>2.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p> <p>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p>
<p>제3조(인증대상)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u>기술</u>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u>기술</u> 3.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u>기술</u>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u>기술</u>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u>기술</u> 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u>기술</u> 	<p>제3조(인증대상)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 2에 해당하는 <u>농림식품 및 수산식품 신기술</u>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u>산업 신기술</u> 3.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u>기술</u>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u>보건의료 신기술</u>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u>환경 신기술</u> 5.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u>건설신기술</u>

현 행	개 정 안
<p>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p> <p>8.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p> <p>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p> <p><신 설></p>	<p>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u>교통 신기술</u></p> <p>7.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u>방재 신기술</u></p> <p>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u>목재제품 신기술</u></p> <p>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u>농업기계 신기술</u></p> <p>②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p>
<p>제4조(신청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신기술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은 대한전기협회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신기술은 소방방재청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p>	<p>제4조(신청 접수기관 및 기간) ①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수산식품 신기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현 행	개 정 안
<p>한 법률」에 따른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p> <p><신설></p> <p><신설></p>	<p>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p> <p>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신기술은 국민안전처</p> <p>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p> <p>9.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p> <p>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p> <p>②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은 상시 신청·접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p> <p>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 신속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p>	<p>제5조(인증기간) ----- ----- -----</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p> <p>② 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인증 신기술·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신설>	<p>제9조의2(신속인증심사)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해당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인증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인증심사에 따른 추가 인증심사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인증심사 수수료는 해당 인증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제도발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정한다.</p> <p>제10조(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① 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④ 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p>
<p><신 설></p>	<p>제10조의2(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인증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p>

현 행	개 정 안
	<p>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신제품인증 신청현황 2. 신기술·신제품인증 발급현황 3. 신기술·신제품 활용실적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신제품인증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p>③ 인증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현황 및 인증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신 설>	<p>제10조의3(수수료)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p>

현 행	개 정 안
<p><u>신기술인증, 보건 신기술인증, 전력 신기술인증, 교통 신기술인증, 방재 신기술인증 및 목재제품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u></p>	<p><u>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u> <u>-----</u> <u>-----.</u></p>

붙임2 인증제도 개선 현황

연번	세부과제	조치사항	조치일	주관처
1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인증	인증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529	산림청
2	공산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유효기간 폐지 등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20151230	산업부
3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인증제도 폐지 후 우수사업장 평가제도로 전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개정)	20151231	고용부
4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확인심사 기준 완화를 통한 비용절감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시행)	20151022	고용부
5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20151231	고용부
6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확인심사기준 완화를 통한 비용절감 (인증기관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20151231	고용부
7	내화구조 인정	사후관리비 징수규정 폐지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20151231	국토부
8	벽체차음 구조 인정	사후관리비 징수규정 폐지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20151231	국토부
9	우수화물정보망인증	인증폐지 후 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	20151223	국토부
10	택시미터의 검정	택시미터 검정기준(KS표준) 개정	20151231	국토부
11	유기가공식품인증	인증처리기간 단축(현행 60일→50일) 및 친환경농축산물인증과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151130	농림부
12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인증처리기간 단축(현행 60일→50일) 및 유기가공식품인증과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151130	농림부
13	토종가축의 인정	처리기간 감축 및 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개정)	20151229	농림부
14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 인증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경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등)	20151231	농진청
15	ICT융합품질인증	인증처리기간 단축 및 타 시험인증과 연계 (인증기관(TTA)의 내부 운영 절차 개정)	20150930	미래부
16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DQC)	민간 인증제도 전환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고시 폐지)	20151218	미래부
17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자기적합성면제대상, 자기시험 적합등록 품목 확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51130	미래부
18	소프트웨어품질(GS)인증	행정SW 품질인증 GS인증제도와 통합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151228	미래부
19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SP)	SP인증 심사비용 (수수료)절감 및 중소기업 심사비 지원 (SP제도운영지침 및 관련 업무규정 등 개정)	20151228	미래부
20	웹접근성품질인증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및 할인기준 명확화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운영지침 개정)	20151231	미래부

연번	세부과제	조치사항	조치일	주관처
2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개인정보보호인증 간 중복심사항목 상호인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1223	미래부
22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CC 인증)	인증수수료절감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CC인증 필수제품 품목 축소 및 지원방안 마련)	20151209	미래부
23	국방마크(DQ마크)인증제도	최초심사비 절감, 정기심사비 면제 등 (DQ마크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	20151231	방사청
24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인증심사비 절감 및 타 인증 상호인정 (국방기술품질원인증업무 규정 개정)	20151130	방사청
25	가스용품검사	생산 및 공정검사 수수료할인율 확대 및 심사항목 축소 (검사업무 규정 개정)	20151231	산업부
26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	시험대상 시료수 최소화 및 수수료인하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개정)	20151231	산업부
27	고압가스안전관리	생산공정검사 수수료 할인 및 심사항목 축소 (검사업무 규정 개정)	20151231	산업부
28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미래부 ICT 융합인증과 통합 운영안 마련 (운영안 마련 및 시행)	20150930	산업부
29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151001 20160203	식약처
30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선교부를 통한 비용절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개정)	20151031	안전처
31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인증제도 폐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20151231	안전처
32	가족친화인증제도	심사절차 간소화 및 심사비용 절감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51231	여가부
33	성능인증	정량지표 도입 및 심사위원회 운영개선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151231	중기청
3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검정수수료 할인율 도입 및 선박용물건과 동시인증으로 중복해소	20151231	해수부
35	측정분석능력인증	KOLAS 인정기관 인증심사 면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개정)	20151231	해수부
36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GS인증제도 통합 (관련 법령, 규정 등 개정 추진)	20151231	행자부
3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	고형연료제품 인증제도 폐지 후 신고제도 전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51231	환경부
38	정수기 품질검사	품질검사기간 단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	20151231	환경부
39	위생안전기준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품질인증	기본 연간 수수료 폐지 및 중복시험항목 면제 (적합인증제도 운영요강 개정)	20160331	환경부
40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수수료 90%인하	20160229	공정위
41	기상측기의 검정	검정수수료 조정 및 처리기한 단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20160331	기상청

연번	세부과제	조치사항	조치일	주관처
42	술품질인증	인증심사비 인하 및 심사 간소화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20160131	농림부
4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KC, KS 고효율기자재 원스톱 인증 및 파생모델 범위 확대 (세부운영방안마련('15.12)→관련 규정 개정)	20160331	산업부
44	무대시설안전진단	기술기준과 국가표준간 상호보완체계 수립 (기술기준에 맞추어 국가표준기술기준 개정 완료)	20151221	문체부
45	날씨경영인증	폐지 후 지원제도로 전환 (날씨경영기업 우대제도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	20160630	기상청
46	전기용품 안전인증	인증 대상제품 축소 및 파생모델 인정범위 확대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20160630	산업부
47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체계 개선 및 절감 (녹색건축물 인증 규칙 기준 개정)	20160531	국토부
48	건설신기술인증	인증절차 통일화, 수수료 상한선 설정 등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609	국토부
49	교통신기술인증			국토부
50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농림부
51	신기술농업기계지정			농림부
52	목재제품신기술 지정			산림청
53	산업신기술인증			산업부
54	산업신제품인증			산업부
55	방재신기술			안전처
56	보건신기술인증			복지부
57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환경부

붙임3

각부처 신기술 인증 비교(8개 부처 10개 신기술)

신기술명칭	신기술	보건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수산식품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건설 신기술	교통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환경 신기술	농기계 신기술
분야	일반	보건	농식품	수산식품	목재	건설	교통	재해	환경	농기계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목재생산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국민안전처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국민안전처 (평가:한국방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근거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수산업발전법	목재산업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기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최초시행	1993년	2009년	2015년	2015년	2015년 시행	1989년	2010년	2007년	1997년	1996년 시행
인증목적	기술의 상용화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보건신기술 제품 신뢰성 제고,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	농림식품신기술 육성 지원	수산식품신기술 육성 지원	목재신기술 육성 지원	개발의욕 고취, 국내 건설기술 발전 도모 국가 경쟁력 제고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 보급 및 활용 촉진, 교통기술 발 전 도모 기술경쟁 력 제고	자연재해저감 관련 우수 기술을 현장 에 신속 적용 보급 을 유도,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 경산업 육성	농기계의 신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
인증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1.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기술 2.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수 있는 공정기술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외국 기술도입 소화 개량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판단, 보급활용 필요인정 기술 등 (공법 및 공정기술 포함)			산업부 신제품인증(NEP) 인증기준 및 대상과 같음	
인증절차	1차(서류-PT)→2차(현장심사), 이의신청, → 3차(종합심사)					요건심사→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견 조회 후 1차심사, 현장심사, 2차심사	요건심사→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견 조회 후 현장심사, 기술심사	요건심사→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견 조회 후 서류, 현장, 종합평가	요건심사→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견 조회 후 현장심사, 서류심사, 현장평가(검증), 종합평가	1차(서류-PT), 2차(현장심사), 이의신청, 3차(종합심사)
접수방법	년3회 접수기간	년3회 접수기간	년 2회	년 4회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수료	1차서류 20만원 2차현장 50만원	1차 18만원 2차 18만원 3차 45만원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20만원	1차 160만원 3차 160만원 연장심사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 160만원	신청수수료 1만원 1차 200만원 현장심사 실비 정산 3차 150만원	신청수수료 1만원 현장심사 100만원 기술심사 100만원	신기술지정 및 검증 200만원 연장 200만원 현장조사 100만원	인증 200만원 (검증 200만원) 연장 200만원	수수료규정 없음	
인증기간	최초:3년 이내 연장:3년 이내 1회 한정	최초:3년 이내 연장:3년 이내 1회 한정	최초:5년 연장:3년범위내 1회	최초:3년 연장:연장 가능(기한규정없음)	최초 : 5년 연장: 7년 범위내	최초 : 5년 연장 : 7년 범위내	보호기간 3년(신기술) 연장 7년 이내	인증 5년(연장 5년) 검증 5년 (1회 연장 7년)	최초:3년 이내 연장:3년 이내 1회 한정	
2014년 인증건수	111	18	22	0	54	8	30	40	0	
기술사용료	×	×	×	×	기술사용료 징수 가능			×	×	